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6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	3
2.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제한 등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4.
3. 회 부 일 : 2025. 2.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3년 6월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을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어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기준금액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 향후 정산보고서 검증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내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하고 있어 증가하는

검증 수요를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입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정산보고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검증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여 내실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 (안 제17조제2항)

개정안은 지방보조사업자¹⁾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함)에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현행과 같음)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지방보조금법」 제2조)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경우 지방보조사업

2) 「외부감사법」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④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겐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 ⑥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6.>
- ⑦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3) 「세무사법」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제16조의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해당 세무법인에 고용된 외국세무자문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4) 「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고 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함)에 따른 감사인⁵⁾, 즉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⁶⁾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받아야 함.

이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제3자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현행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은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참고하면 이는 보조사업자가 작성

5) 「외부감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 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6) 이때, “감사반”은 ①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에 등록된 회계사로서 실무수습을 등을 이수한 자 일 것, ② 구성원이 3명 이상일 것, ③ 구성원이 직무정지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회계법인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등 4가지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각호)

하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인 정산보고서⁷⁾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⁸⁾하는 것임.

현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회계정보를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측정·평가하고 있음⁹⁾¹⁰⁾.

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제4조(검증 관련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및 항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2. 지방보조사업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련 증명서류의 적절성

3.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지방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4.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산정의 정확성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의 위반 여부 및 조건 위반에 따른 불인정금액의 정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에 관한 조건을 불인 경우에는 해당 반환 금액의 정확성

7.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어 지방보조금의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는 그 이월금액의 정확성

8.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의 구비 여부

9.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의 정확성

10) 현재 감사인이 실시하는 적정성 검증 관련 보고서 양식은 후단에 첨부한 참고자료 참조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¹¹⁾, 2023.6.20.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적정성 검사를 받는 보조사업의 기준 금액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¹²⁾.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성 검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¹³⁾이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11) 「보조금법」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12) 「보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46호, 2023.06.20. 일부개정)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789호, 2024.12.20. 발의, 2024.04.06. 기준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

이에, 개정안은 향후 「지방보조금법」도 「보조금법」에 맞춰 정산 보고서 적정성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금액 기준이 하향되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기관 확대>

현행	개정안
회계법인	(현행과 같음)
한국회계사 협회에 등록한 감사반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	
<신 설>	세무법인
	3명 이상의 세무사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면, 현재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1~2월)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검증 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검증기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이 「보조금법 시행령」과 같이 개정되는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¹⁴⁾, 개정안의

14)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대상이 되는 보조금액의 기준을 하향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인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¹⁵⁾,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로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¹⁶⁾, 이를 바탕으로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업무가 공인회계사

15)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16)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의 고유업무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상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

회계사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세무사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회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은 회계감사기법을 활용하여 독립된 제3자가 지방보조금 집행내역(회계기록)을 검증하는 업무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라는 입장이며, 한국세무사회는 재무제표·기업회계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검증지침에 따라 사업집행내용과 비용처리 등을 확인하는 업무로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한편, 국가 등 공공기관¹⁷⁾과 공익법인이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17) 「세무사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약칭하고 있음.

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¹⁸⁾이 제출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가 2022.04.28.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¹⁹⁾”로 개정하면서 세무사 또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²⁰⁾한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²¹⁾²²⁾.

18)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55, 2024.10.17. 발의),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96, 2024.10.29.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①·② (생략)

③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은 적절한 재정지출, 위탁사업의 운영이나 조세특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90호, 2022.04.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90호, 2022.04.28. 일부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비 결산 검사인”이라 한다)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1)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을 거쳐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둘째, 국고보조금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이를 지켜본 뒤, 「지방보조금법」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① 「세무사법」 상 세무사의 직무는 조세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사 법정 직무범위에 대한 변경 없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정산보고서 검증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보조금법」도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률간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²³⁾.

한국공인회계사회는 ①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에 해당한다는 점, ②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의 일관성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한 결산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례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음(2022추5125).

22) 다만, 2024.03.27. 개정을 통해 다시 해당 용어가 “회계감사”로 변경되고 회계사에게만 감사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524호, 2025.05.27. 일부개정)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3) 한편, 기획재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보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산보고서 검증업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업무는 소수의 감사인이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검증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추가 참여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④ 무자격자의 검증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세무사회는 ①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사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점, ②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기관을 회계사로 한정할 경우 검증할 회계사 부족으로 국민부담이 과중되며 부실검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적정성 검증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소규모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검증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참고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양식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a)	지방자치단체 부담금(b) 시도비	시군구비	자기부담금(c)	합계(d=a+b+c)	국고보조금비율 (e=a÷d)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f)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i=f+h)	수익금		
	전기 이월액(g)	집행액 (h)		발생액 (j)	반환액 (k)	미반환액 (l=j-k)

당기분 집행잔액 (m=d-f)	전기 이월 잔액 (n=g-h)	집행잔액 (o=m+n)	발생 이자 (p)	차기 이월액 (q)	반환 대상액 (r=o+p+k-q)	국고 보조금 반환액 (s)	지방자치 단체 부담 금 반환액 (t)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u=r-s-t)
							시도 비	시군 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자치단체 부담금 반 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 비	시군 구비	

5. 검증 의견

※ 자료 :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표4]

2.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제한 등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검증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감사 또는 외부기관의 감사 등으로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검증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검증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3년 2.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제3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u>발생한 경우: 2년</u> 3. <u>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1년</u>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게재하고, 해당 검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보고서 검증기관 선정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검증기관의 선정을 제한하고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정산보고

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 → 일정기간 선정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 : 3년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 발생 : 2년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 : 1년
정산보고서 거짓 검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 벌금

현행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검증기관에 대해 제재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일정기간 해당 검증기관에 대한 선정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⁴⁾

24)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조(감사인의 책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정산결과의 오류나 누락이 외부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지방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

구분	내용
외부기관의 감사에 의해 감사인의 정산 결과의 오류나 누락 발견 → 일정기간 선정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 : 3년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 발생 : 2년
	고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 : 1년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선정 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하는 것보다 「지방보조금법」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²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령에 제재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에 따른 제재 수준이 개정안보다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공인회계사법」은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최대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²⁶⁾하고 있으며,

25) 헌법재판소는 법률유보 원칙에 대하여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라고 규정하고 있음(헌재 1999.05.27. 98헌바70).

26)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²⁷⁾에 처하고 최대 등록취소 이상의 징계²⁸⁾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성실의무²⁹⁾를 위반한 경우 최대 등록취소의 징계³⁰⁾를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27)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벌칙)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공인회계사법」

제15조(공정·성실의무등) ③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징계)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회회칙을 위반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직무정지
 3.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4. 견책

29)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30)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¹⁾).

<현행 「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및 개정안 비교>

구분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개정안
오류 또는 누락	최대 등록취소의 징계	별도 규정 X	1~3 년간 선정 자격 제한
거짓 검증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등록취소의 징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대 등록취소의 징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정산보고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기관에 대한 선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거짓 검증을 한 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은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개정안보다 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목적이라면 무자격자의 검증 참여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하며, 검증업무는 공인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31) 한편,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직무 과정에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직무를 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회계사의 고유업무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검증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한국세무사회는 정산기관의 부실검증 시 책임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부실검증을 제어하고 세금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